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이윤정 의원이 추진 중인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1. 14.

광명시의회 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14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19일(일)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5,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yunnamil@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의사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5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인권증진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이영호 의원

찬 성 자 : 이윤정, 김기춘,
고순희, 이길숙 의원

1. 제안이유

- 현 제도에서는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이 직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겸할 수 있어, 평의원이 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바,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할 수 없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할 수는 없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1항 단서)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7. 11. 15. ~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영호 (2680-250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 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u><신 설></u>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 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 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 ----- ----- <u>다만,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 선할 수 없다.</u> ② 및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지방자치법」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이윤정 의원

이길숙, 안성환, 나상성,

찬 성 자 : 김기춘, 고순희, 김익찬,
이영호 의원

1. 제안이유

- 시민소통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청소년·청년 분야를 추가 포함하여 시민참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민소통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청소년·청년 분야 추가(안 제7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불 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5명” 을 “6명” 으로, “100명” 을 “120명”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환경” 을 “도시·환경, 청소년·청년” 으로, “5개” 를 “6개”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이운정 의원 대표발의 (외 명)
소 관	미래전략실
입 안	이운정 의원 (02-2680-253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 위원장 5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 6명 ----- 120명 -- -----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 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행정·교육, 보건·복지, 문화·체육, 경제·유통, <u>도시·환경</u> 분야의 5개 분과를 둔다.	② ----- ----- <u>도시·환경, 청소년·청년</u> ---- 6개 -----

광명시 인권증진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9일

발 의 자 : 나 상 성 의원

찬 성 자 : 고순희, 김기춘,
안성환, 이길숙 의원

1. 제정이유

- 광명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공무원을 발굴하여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인권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광명시 인권증진상’을 제정하고자 함
- ‘광명시 인권증진상’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광명시를 인권도시의 표상으로 세우고자 함
- 국가기구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인권상에는 ‘대한민국 인권상’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상’ (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이 있음.

2. 주요내용

- 광명시 인권증진상 포상분야 규정(안 제2조)
- 선정절차 및 광명시 인권증진상 심사위원회 규정(안 제3조~제4조)
- 수상대상자 명단과 공적개요 등을 공개 의견 수렴 규정(안 제6조)
-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 관련규정(안 제9조)

3. 조례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체서 : 붙임

- 「헌법」 제10조, 제11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

5. 예산수반사항 : 붙임

6.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광명시 인권증진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광명시 인권증진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분야) 광명시 인권증진상(이하 “인권증진상”이라 한다) 포상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분야 : 인권침해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에 관하여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
2. 인권교육 및 문화증진분야 : 공공기관·기업·교육현장·언론·시민 등에서 인권교육 및 인권친화적문화조성, 인권공모전, 인권홍보활동, 인권강연, 인권저술 기고 등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3. 인권증진 및 연구분야 : 인권신장을 위한 법제마련과 연구활동 및 제도개선, 정책개발 등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제3조(선정절차) ① 광명시장은 매년 시상 범위를 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제4조에 따른 광명시 인권증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의되 한다.

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인권보호·인권교육·인권증진에 대한 기여도, 파급효과, 활동기간, 활동실적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광명시 인권증진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광명시장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천 및 검증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4조(광명시 인권상 심사위원회) ① 광명시 인권증진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명시 인권증진상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인권보호, 인권교육, 인권증진에 경륜을 갖춘 인권전문가, 광명시민인권위원, 광명시 국장급 이상 공무원 및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광명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감사실장으로 하며, 다만 위원 중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은 매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시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의견수렴) ① 광명시 인권증진상 대상자가 결정되면, 그 명단과 공적개요 등을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7일 동안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② 광명시장은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민인권팀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상장 및 시상금 등) ① 광명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여한다.

②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은 취소,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은 취소한다.

제10조(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수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 포상조례」 및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감사실
입 안 자	나상성 의원 (2680-2509)

관계법령 발췌서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광명시 인권증진상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8조)
- 광명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여한다.(제9조)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광명시 인권증진상 심사위원회 운영
- 광명시 인권증진상 시상금 지급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합 계	3,560	11,680	11,680	11,680	38,600
시상금	3,000	10,000	10,000	10,000	33,000
심사수당	560	1,680	1,680	1,680	5,096

※ 광명시 인권증진상 심사위원회 위원 7명 기준(2시간×80,000원, 공무원제외)

기타 참고사항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234호, 2017.3.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12>

1.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광명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광명시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이란 인권침해, 상담, 조사, 구제 및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옴부즈만”이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 및 소속기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폭넓은 시민의 참여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인권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 지향적 행정조직과 인권정책 추진체계 구축
2. 재정상의 조치
3. 소속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4. 인권영향평가 실시

5.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의 적극 발굴 추진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고충민원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적당한 조치를 취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때에도 그와 같다. <개정 2017. 3. 12>

③ 시장은 광명시민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 및 그 사유를 권고 받은 3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누리며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 3. 12>

②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광명시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2장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내지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3. 12>

1. 인권증진의 기본 이념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방향 및 추진목표

3. 인권침해 요소 및 인권 침해적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4.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인권 옹호

5. 분야별 인권증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6.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7. 제9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지수 연구·개발 계획

8. 인권증진 교육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2조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시민의 인권 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② 시장은 공무원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인권 지향적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3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2>

-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 지원
- 2.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8조(인권보호 및 인권보장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인권영향평가제도 및 인권지수 연구·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지수에 대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제3장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제10조(광명시민인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민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시 인권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 3. 12>

1.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시민 7명
3.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3명
4. 인권 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3명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장은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위촉직 중에 인권 약자를 포함해야 한다.

⑤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3.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및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기관 및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6. 시민이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하여 위원회에 제기한 사항의 실태조사와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7. 인권에 관한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의 시정권고
8.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9.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7. 3.

제13조(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권센터의 상담, 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인권증진소위원회를 둔다.
1. 소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위원 중에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 한다.
 2.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권고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한다.
- ④ 모든 의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 ⑥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센터의 장이 맡는다.

제14조(독립성 보장)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사항에 특별한 경우 이의를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활동,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출석 등으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전문개정 2017. 3. 12〕

제16조(위원회 의견청취)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광명시 소속기관의 업무에 대해 필요시 해당부서의 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다른 조례 제·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광명시민인권센터

제17조(광명시민인권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및 인권상담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민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3. 12〉

1. 위원회 업무 지원
2.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
3. 소속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인권 프로그램 개발, 홍보
4. 인권증진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실천에 관한 사항
5. 인권영향평가, 인권지수의 연구·개발 관련 사항

6.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조사, 대화모임

가. 시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시가 지도·감독하는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다. 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의 경우

8. 인권보호와 관련한 국내·외 법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 불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

10. 그 밖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인권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필요한 직원들을 둘 수 있다.

제18조(시민위원) ① 시장은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민위원은 12명 이상 2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2>

② 시민위원은 광명시에서 진행하는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 하거나, 인권활동경력이 있는 시민, 인권약자 중에서 위촉하고,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12>

1. 인권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2. 인권정책이 확산 될 수 있도록 모니터, 홍보와 지원활동

3. 인권정책 제안 및 인권동아리 활동

4.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시설 등에서 인권 침해 감시 및 진정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시민위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민위원으로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2>

④ 시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3. 12>

제19조(수당 및 여비) 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시민위원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

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시민인권옹호관

제20조(설치 및 직무)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센터 소속의 옹호관을 둔다. <개정 2017. 3. 12>

② 옹호관은 인권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인권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상임 옹호관 1명과 비상임 옹호관 3명 이상 5명 이내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2>

③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옹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④ 옹호관은 제17조제2항제7호 사항과 관련하여 인권센터에 상담이나 진정이 접수 되었을 경우,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나 시설 장의 동의를 얻어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옹호관은 옴부즈만을 대행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7. 3. 12>

1. 고충민원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 처리 지원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3.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4.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5.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 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제21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인권옹호관 등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 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3일

발 의 자 : 이 길 숙 의원

찬 성 자 : 이영호, 김익찬,
안성환 의원

1. 제안이유

- 조례에 관련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
-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선진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민정 지원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고 노사민정이 협력과 상생으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목적 개정(안 제1조)
 - － 관련 근거규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명시
- 노사민정협의회 기능 추가(안 제2조)
 - －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확립에 관한 사항
 - － 노사민정 발전을 위한 행사, 교육, 연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사용자·지역주민”을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사용자·지역주민”으로, “노사협력 증진,”을 “노사협력 증진, 노사민정 지원,”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확립에 관한 사항

5. 노사민정 발전을 위한 행사, 교육, 연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일자리창출과
입안자	의원 이길숙 (02-2680-2539)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근로자·사용자·지역주민</u> 및 광명시가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u>노사협력 증진</u>,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u><신설></u>	제1조(목적) ----- 「<u>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u>」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u>근로자·사용자·지역주민</u> -- <u>노사협력 증진, 노사민정 지원</u>, ----- ----- ----- -----. 제2조(기능) ----- -----. 1. ~ 3. (현행과 같음) 4. <u>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확립에 관한 사항</u> 6. (현행 제4호와 같음) 5. <u>노사민정 발전을 위한 행사, 교육, 연수 등 지원에 관한 사항</u>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3일

발 의 자 : 김 익 찬 의원

찬 성 자 : 조화영,안성환 의원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광명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표지판 (준공석 및 준공판 등)에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 1천만원 이상을 50만원 이상으로 개정함.
-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에 준하여 공개하도록 개정

2. 주요내용

- 광명시 홈페이지에 제5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 제5조~제7조에 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3. 개정조례안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을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 제5조~제7조에 준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1,00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회계과
입안자	의원이길숙 (02-2680-2539)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광명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하고, 광명시 홈페이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u>1개월 이내에 1년 이상</u>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 ----- ----- ----- ----- ----- ----- 「 <u>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u> 」 제5조~제7조에 <u>준하여</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공개 범위) ① ----- ----- -----.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u>1,000만원</u> 이상인 경우	1. ----- <u>50만원</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3일

발 의 자 : 조 화 영 의원

찬 성 자 : 김익찬, 이길숙 의원

1. 제안이유

- 길고양이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체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중성화 사업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리 및 중성화 사업의 위탁 규정 신설 (안 제19조제4항)

3. 개정조례안 : 불 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불 임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설치 및 관리를”을 “설치, 관리 및 중성화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와 길고양이의 포획, 수술, 치료 등을 포함한 중성화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동물보호센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생활위생과
입 안	의 원 조 화 영 (02-2680-250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u>설치 및 관리를</u> 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u><신 설></u>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설치, 관</u> <u>리 및 중성화 사업을</u> ----- -----. ④ <u>시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와 길고양이의 포획, 수술, 치료 등을 포함한 중성화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동물보호센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u>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이영호 의원

찬 성 자 : 이길숙, 김익찬,
안성환 의원

1. 개정이유

- 각박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매일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자율방범대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지원(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해당 없음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자율방범대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입안자	의원 이영호 (2680-2508)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방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① ----- ----- ----- -----.
1. 피복비, 야식비 및 소모성 장비 구입비	1. ----- -----
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법순찰 차량 유지 경비	2. ----- -----
3. 상해보험 가입비	3. -----
<u><신 설></u>	<u>3의2. 자율방범대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u>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4.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7년11월10일

발 의 자 : 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김익찬, 이영호,
이길숙 의원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

2. 주요내용

- 제1조~제3조는 목적과 범위 정의를 주요 내용으로 함
- 제4조는 접수창구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
- 제6조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7조는 홍보활동에 대한 내용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중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등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목에서 규정한 장기를 말한다.
2.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3.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사람의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하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민원부서의 민원창구를 말한다.

제4조(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운영)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등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 방향
2.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시장은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
2.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감면
3.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로 광명시 홈페이지에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하여 유가족과 방문자에게 추모공간을 제공
4. 제1호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광명시민에게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홍보활동) ①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 기관에 장기기증 홍보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명시민들의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광명시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 한다.

③ 장기기증의 홍보를 활발히 하기 위하여 홍보대사를 둘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1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등록자 또는 기증자

소 관	시민보건과
입 안	의 원 안 성 환 (02-2680-2520)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9일

발 의 자 : 이 영 호 의원

찬 성 자 : 이길숙,김익찬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 각 초·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등 지역주민들이 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학교 실내체육관 등의 시설이용시 학교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냉·난방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 주민 및 체육동호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한하여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실내체육관 등) 대관 시 공공요금 지원 근거 신설
(안 제2조제6호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실내체육관 등) 개방시 소요되는 공공요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이영호 의원 (2680-2508)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 -----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실내체육관 등) 개방시 소요되는 공공요금</u> 7. (현행과 같음)

광명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이 윤 정 의원

찬 성 자 : 나상성, 김기춘,
고순희 의원

1. 구 분 : 제정

2. 제안이유

-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특히 일반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높은 가운데,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안 제3조 ~ 제4조)
-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안 제5조)
- 지원 신청(안 제6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광명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광명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명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바. 그 밖에 광명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원 대상 자	성 명		생년월일		가구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과의 관계	☐ 본인 ☐ 친족(관계:) ☐ 기타관계인()				
	대 구 상 분	☐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설치시설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광명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광명시장 귀하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20.]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7., 2015.7.24.> [본조신설 2011.8.4.]

관 계 법 령	내 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9.]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등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5.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계법령 및 관련조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8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3조
- 광명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발생 요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거주하는 광명시 화재안전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광명시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소화기 : 18,000원 × 4,600가구 = 82,800,000원
 - 단독경보형감지기 : 13,000원 × 13,800대 = 178,400,000원
 - ※ 가구당 3대
 - 설치비 : 15,000원 × 4,600대 = 69,000,000원

나. 추계의 결과

- 총 소요액 : 3억 3천 2십만원

다. 재원조달 방안 : 2018년도 일반회계 추경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작성자 : 광명시의회 의원 이 윤 정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3일

발 의 자 : 고순희 의원

찬 성 자 : 김익찬, 이영호 의원

1. 제안이유

-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현재의 단절된 사회변화에 독거노인들의 고독사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 조례제정을 하게 됨.
- 노인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등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가 문제화되는 현실에서 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우리사회가 핵가족화 및 고령화 추세로 감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 질병, 자식들로부터의 무관심, 사회적 고립 등 노인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에 대한 관심과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적 지원근거 마련 및 좀 더 세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노인 계층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안 제4조)
-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안 제5조)
- 지원대상(안 제6조)
- 지원사항(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규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드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광명시(이하“시”라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홀로 사는 노인
 -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사는 노인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사는 노인에게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 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광명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2. 고독사 위험자에게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다.
5.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 하였을 때에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표창)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발굴·신고·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법인,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입안자	의원고순희 (02-2680-6582)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3일

발 의 자 : 조 화 영 의원

찬 성 자 : 김익찬, 이길숙,
이영호 의원

1. 제안이유

- 실질적이고 현장적용 가능한 생활 문화 및 예술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불 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불 임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생활문화예술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 단체, 동호회 및 개인 등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 또는 유희공간을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 단체, 동호회 또는 개인에게 제공할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문화체육과
입 안	의 원 조 화 영 (02-2680-250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생활문화 진흥) <u>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 지원 및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u> <u><신 설></u>	제5조(생활문화예술 지원) ① <u>시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 단체, 동호회 및 개인 등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② <u>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 또는 유희공간을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 단체, 동호회 또는 개인에게 제공할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3일

발 의 자 : 이영호 의원

찬 성 자 : 김익찬, 이길숙, 김기춘,
조화영, 고순희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법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장애인에 대하여 체육시설 감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 이에 광명에서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담아서 조치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육성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 순위 특례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의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단,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우선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문화체육과
입 안	이 영 호 의 원 (02-2680-250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 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 4. (생략) <u><신 설></u>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u> <u>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u> <u>사(단.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u> <u>할 때에는 중증장애를 가진 사</u> <u>람이 우선한다.)</u>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0일

발 의 자 : 고 순 희 의원

조화영, 이영호, 이길숙,

찬 성 자 : 김익찬, 이윤정, 나상성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바닥표시, 안내 및 유도표지에 대한 개정된 신규격이 개정되어 명시되어 있으나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아니한 기존 규격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구체적인 규격 신설(별표3)
 -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별표3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별표3(신설) : 표지판규격, 색, 방향, 설치위치, 안내표기 내용 등의 표기 구체화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별표 3 서식에 따라 다음”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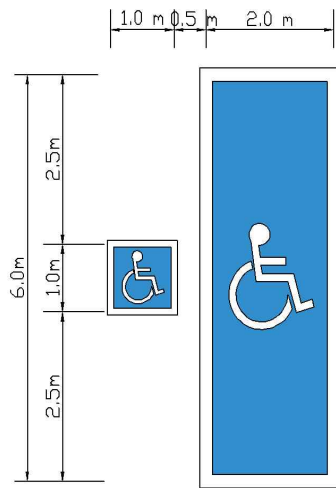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첨단도시교통과
입 안	의 원 고 순 희 (02-2680-6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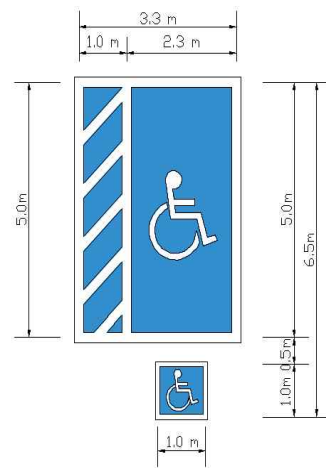
[별표 3]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유도 표지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바닥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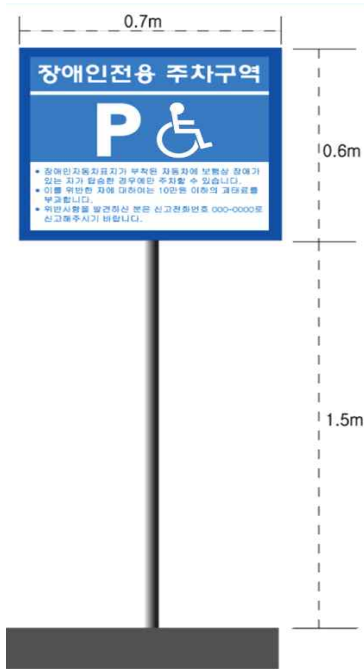


<평행식>



<직각형식>

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유도표지



= 비 고 =

1. 규 격

가. 표지판 : 70cm×6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cm×32cm

2. 색 :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그림·기호·문자)을 사용한다.

3. 방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사용자의 눈높이(150cm)와 휠체어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5.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000-000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별표 3 서식에 따라 다음 ----- --. 1.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9.>